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9일, 진성준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9.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4.9.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전체회의(2024.9.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진성준의원)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 중장기감축목표·부문별감축목표·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을 수립·변경하거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는 해당 절차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위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① 국가전략 수립·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②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7조제6항 신설),

③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시행령에 규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규정(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신설)하는 한편, ④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후단 신설).

첫째, 현행법 제7조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에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¹⁾.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의 경우와 같이 국가전략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근거 및 자료제출요

1) **시행령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 제7조제6항은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근거 및 업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가전략을 수립·변경하거나²⁾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하는³⁾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의 국가기본계획 및 제11조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변경에 있어서는 공청회 절차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경우 공청회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⁴⁾, 시·도계획의 수립·변경시에는 공청회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은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변경도 국가전략 및 중장기감축목표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변경시에 공청회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③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행령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안 제11조의 시·도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5)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시·도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절차적 민주성 제고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6)에서도 시·도지사 등이 계획 수립 시 민간 단체,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법 제10조7)는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지원에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다 명확한 협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5) **시행령 제6조(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계획」 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7) **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안 제10조제5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